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등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28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등(안 제5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천호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2. 25.

다.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등(안 제5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업무로 정책 개발, 중장기 전략 기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장비·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며,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진흥 및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2. <u>항공우주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u> 3. <u>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지원 업무</u> 4. <u>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u> 5. <u>항공우주산업 관련 장비·인프라의 구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6. <u>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u> 7. 그 밖에 <u>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⑤ <u>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u>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⑦ <u>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나. 검토의견

○ 항공우주산업은 고위험·고비용·장기투자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최근 우주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글로벌 우주경제는 2035년까지 2024년 대비 약 3배 성장이 전망¹⁾되는 등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공공 인프라 중심에서 산업 응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혁신 역시 민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추세임²⁾.

○ 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³⁾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우주항공기술 확보,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은 그 소관 사무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인재 육성, 국제협력, 우주위험 대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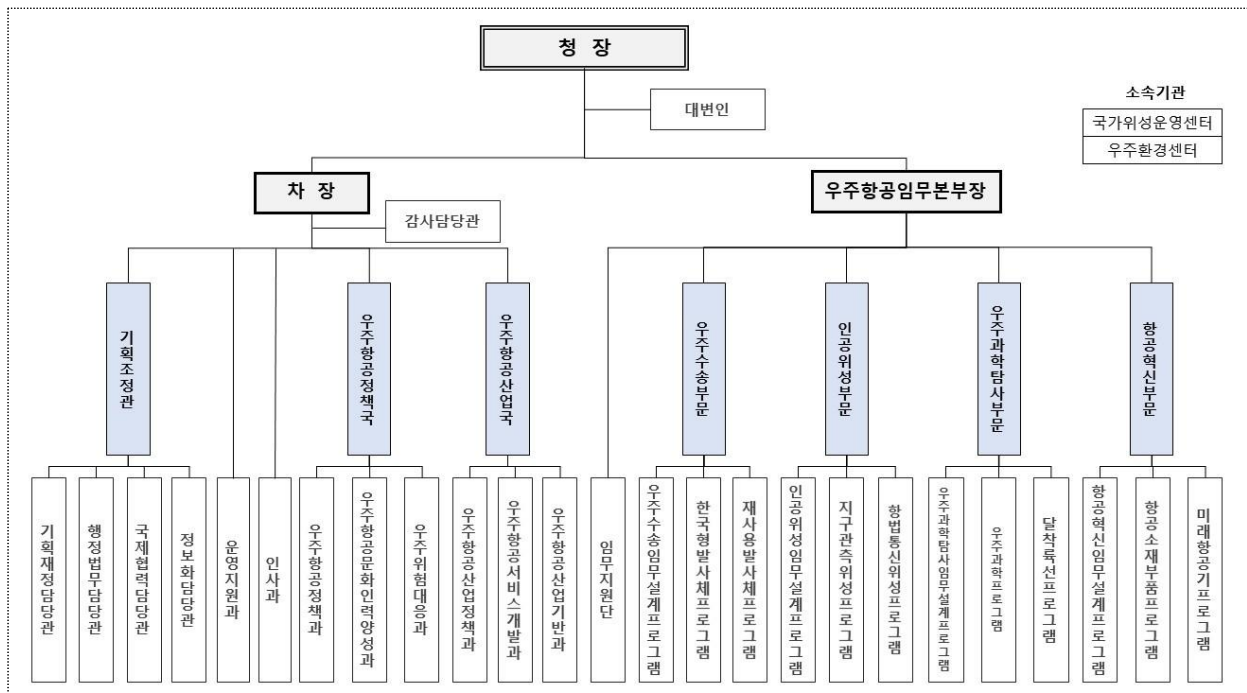
1) '24년 5,960억\$→'35년 1조8천억\$로 성장 예상(맥킨지 2024 우주 경제 보고서)

2) 우주항공청 정부 업무보고(2025.12.) 자료 참조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예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 특히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항공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⁴⁾를 별도로 두고 있어, 주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우주항공청 조직도>



-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외에도 산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바, 현행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산업국을 두고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기능 등의 비중이 큰 조직이라는 점⁴⁾에서 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4) 우주항공산업국은 3개과 24명 규모에 불과한 반면,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임무지원단과 4개의 부문, 총 10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진흥, 기술개발 지원, 시험·인증,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주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우주항공청의 산업 진흥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정부도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사업진흥 전담기구인 진흥원의 설치 방향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5.11.)」에 반영하고 있는바, 별도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우주항공청 및 기존 유관기관과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흥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업무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은 진흥원의 업무로 정책 개발·조사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및 성과분석, 연구개발·사업화·기술이전 지원, 인력양성, 장비·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 기업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중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은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정책 수립·총괄 기능과 접점이 있을 수 있고,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은 기존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⁵⁾.
- 일반적으로 국가 등이 특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일정 부분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⁶⁾, 그 수행 사업은 해당 법인의 고유 기능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관 신설은 조직·인력 확대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실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산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창의재단 등에 산업동향 조사·분석 및 인재육성·저변확대 업무의 일부를 위탁중이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사업법」 등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등에서 우수기업 지원, 해외진출 등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542 '6. 사업의 범위' 발췌
 특수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설립 근거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특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특수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독점적 지위가 인정된다.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는 우주항공청 및 기존 유관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음.

- 우주항공청은 진흥원의 업무를 정책수립 지원 및 관련 사업 수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⁷⁾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한 후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상 진흥원의 업무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존 유관기관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우주탐사 및 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재정경제부는 항공우주연구원, 업무위탁 중인 민간법인 등 기존 기관의 업무범위·기능 확대 등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기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9

7) (정책연구)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연구, '26 4~10월